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주택형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글만문장 세네구
59	50	5	5	10	2	3	25	25
74	108	10	11	22	3	8	54	54
84A	330	33	33	66	10	23	165	165
84B	181	19	18	36	5	13	91	90
99	37	-	4	-	1	-	5	32
계	706	67	71	134	21	47	340	366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 제 1호 및 제 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함.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J제 2조제 2호의3 및 제 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리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치금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특별공급 청약신청										
구분	특별공급	일반 1 순위 일반 2 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7.12(월)	2021.07.13(화)	2021.07.14(수)	2021.07.20(화)	2021.08.02(월) ~ 08.07(토)					
방법	인타	l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홈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 계약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c - 스마트폰앱	b.kr		* 당사 견본주택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49-1 번지					

록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서류	유형	HILLID	바그리조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우기자ㅠ세출네 6 ᆽ ㅠㅋㄲ 8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0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0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0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 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 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055-242-0050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안내문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6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경남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경상남도청 복지국	성격증성 필요없는		
10 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남동부보훈지청	입주자저축에 가압하여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소기업 근로자	경상남도지방중소벤처기업청	N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구분	59	74	84A	84B	99	합계			
	국가유공자	1	2	7	4	-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7	4	-	14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10 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7	4	-	14			
7208	중소기업 근로자	1	2	7	4	-	14			
	장애인	1	2	5	3	-	11			

✓ 청약예치금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전용면적 10 2 ㎡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전용면적 135 ㎡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록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										
구분	특별공급	일반 1 순위	일반 2 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07.12(월)	2021.07.13(화)	2021.07.14(수)	2021.07.20(화)	2021.08.02(월) ~ 08.07(토)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홈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 계약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 - PC : www.appl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49-1 번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

서류	유형	쉐다니크	바그기즈	ᅔᄁᄖᄅᆐᄎᄜᄊᇚᆼᇬᆈ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0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0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0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 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 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055-242-0050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의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71세대)

- <mark>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mark>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됩니다.)
-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 상기 내용 외 다른 사항은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임심표조	중매점	기준	점수	비꼬
계	100	-	-	-
BL Id Id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4명	35	- 자녀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 명	30	
od o ol		자녀 중 영유아 3 명이상	15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 영유아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 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 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 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시대구성 (3)	3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 3 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 년이 경과된 자
		10 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 자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 기간 (4)	20	5 년 이상 ~ 10 년 미만	15	- 청약자가 성년 (만 19 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1년이상~5년미만	10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 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 (만 19 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
해당 시 ·도 거주기간 (5)	15	5 년 이상 ~ 10 년 미만	10	│ (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1년이상~5년미만	5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 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합니다.
- (4), (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합니다.
-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예당시규	걸답기군	수가지뉴 제절대당 및 유의작당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0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0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 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 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0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 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_		배우자	- 3 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1-1 "1.7 (11 ")	본인	- 만 19 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 18 세 이상 ~ 만 19 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 년이 경과된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055-242-0050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20% 범위 (13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우선)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서류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ユ コ	공급유형		2020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ठ ध ते छ		구분	3 인 이하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 원	7,094,205 원	7,094,205 원	7,393,647 원	7,778,023 원	8,162,399 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6,030,161 원 ~ 7,236,192 원	7,094, 2 06 원 ~ 8,513,046 원	7,094, 2 06 원 ~ 8,513,046 원	7,393,648 원 ~ 8,87 2 ,376 원	7,778,0 2 4 원 ~ 9,333,6 2 8 원	8,16 2 ,400 원 ~ 9,794,879 원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6,030,161 원 ~ 8,44 2,22 4 원	7,094, 2 06 원 ~ 9,931,887 원	7,094, 2 06 원 ~ 9,931,887 원	7,393,648 원 ~ 10,351,106 원	7,778,024 원 ~ 10,889,232 원	8,162,400 원 ~ 11,427,359 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7,236,193 원 ~ 9,648,256 원	8,513,047 원 ~ 11,350,7 2 8 원	8,513,047 원 ~ 11,350,7 2 8 원	8,872,377 원 ~ 11,8 2 9,835 원	9,333,629 원 ~ 12,444,837 원	9,794,880 원 ~ 13,059,838 원			

-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0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0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 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 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 (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0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 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이외 불가)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 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055-242-0050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추가서류(소득증빙 관련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근로자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 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①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③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	①, ② 세무서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2021.01.01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견본주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소득증빙을 위한 자격확인 추가 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서류 중 직장내 발급 서류에 한해 해당 회사의 직인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미비 또는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해당 자격확인 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점 꼭 숙지하시어 해당 회사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대표번호: 055-242-0050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의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2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mark>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mark>(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 30 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9년미만	18		
		1년 미만	2	9 년 이상 ~ 10 년 미만	20		
		1년이상~2년미만	4	10 년 이상 ~ 11 년 미만	22	- - ■주민등록표등본	
1)		2년이상~3년미만	6	11 년 이상 ~ 12 년 미만	24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기간	32	3년이상~4년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710		4년이상~5년미만	10	13 년 이상 ~ 14 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 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5년이상~6년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이상~7년미만	14	15 년 이상	32		
		7년이상~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 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 세 이상 ~ 만 30 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 가족관계증명서	
		2명	15	6 명 이상	35		
		3명	20			(2) 만 30 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6 개월 미만	1	8년이상~9년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 년 이상 ~ 10 년 미만	11		
	17	1년이상~2년미만	3	10 년 이상 ~ 11 년 미만	12		
3		2년이상~3년미만	4	11 년 이상 ~ 12 년 미만	1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3년이상~4년미만	5	12 년 이상 ~ 13 년 미만	14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4년이상~5년미만	6	13 년 이상 ~ 14 년 미만	15		
		5년이상~6년미만	7	14 년 이상 ~ 15 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 년 이상	17		
		7년이상~8년미만	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

서류	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0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0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0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 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 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70/C2#+H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 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 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 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30 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직계비속	- 만 18 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055-242-0050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안내문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7% 범위 (47세대)

- <mark>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mark>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고그이혀	구분	2020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下 世	3 인 이하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 원	9, 222 ,467 원	9, 222 ,467 원	9,611,741 원	10,111,430 원	10,611,119 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7,839,209 원 ~ 9,222,468 원 ~ 11,350,728 원		9, 222 ,468 원 ~ 11,350,7 2 8 원	9,611,742 원 ~ 11,829,835 원	10,111,431 원 ~ 12,444,837 원	10,611,1 2 0 원 ~ 13,059,838 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100%
- ※ N → 9인 이상 가구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추가 자격확인 제출서류 (소득증빙 관련 서류)

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i> </i> 세무서
자격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 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 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 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

서루	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0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ㆍ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0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0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 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 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 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0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 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 (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재직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을 위한 추가 자격확인 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055-242-0050